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
----------	----

제출년월일 : 1999. 6. 29.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장학생 선발시 까다로운 추천요건을 완화코자 함.

2. 주요골자

장학생선발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였으나,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여 선발 절차를 간소화 함.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중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을 “소속 학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p>	<p>제4조(선발) ①----- ----- 소속 학교장의 의견 ----- ----- -----</p>